

## 공정위, 카르텔 일괄정비방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

공정거래위원회는 각종 개별법령에 근거하여 운영되어 온 55개 카르텔제도를 검토한 결과 동 카르텔 제도 중 32개 제도의 운영에 대하여 폐지하거나 보완하는 방안을 마련하고, 이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자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난 7월 23일(목) 대한상공회의소 2층 중회의실에서 KDI와 공동으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.<sup>(주)</sup> 동 공청회에서는 KDI 신광식 연구위원의 주제발표에 이어 학계와 관련단체 등 각계 참석자들의 토론이 있었다.

공정위는 동 공청회 및 입법예고 과정 등에서 제시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카르텔정비방안을 확정한 후 23개 법률개정대상은 「카르텔 일괄정비법」 제정안에 포함하여 금년 정기국회에 상정하고, 시행령 등 하위법규개정대상 및 규제개혁대상 9개는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금년 중에 관계규정을 개정할 계획으로 있다.

동 공청회에서 논의된 주요토론내용은 다음과 같다.

### 주요토론내용

#### 김기철 건축사협회 이사

- 건축사의 경우 지금도 보수기준의 30%~70%를 받고 있음
- 건축사간의 경쟁으로 설계비용이 낮아지게 되면 설계기능이 약화되어 소형건축물의 경우 부실 공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

#### 김종성 한국공인회계사회 부회장

- 공인회계사의 보수를 자율화할 경우 전체금융기관이 담합을 해서 낮은 감사수수료를 지불할 가능성도 높음
- 외부감사인의 수임한도를 폐지할 경우 그동안 대형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정부 시책에 순응하였던 회계법인 등이 오히려 손해를 볼 가능성이 있으며, 대부분의 법인이 12월 결산법인

이어서 수임한도제를 폐지하는 경우 3개월 이내에 회계감사를 마치기는 어려우므로 결산시기가 분산되거나 회계감사보고서 제출기간을 연장도록 하는 조치 필요

#### 이재호 변호사

- 변호사 보수에 대해서는 품질에 따른 가격차별화가 가능하도록 변호사 보수기준을 폐지하고 과다보수문제는 변호사 윤리나 사법적 심사 등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

#### 정재우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소 부연구위원

- 보험상품의 특화라는 측면에서 부가보험요율의 자율화에 대해서는 찬성하나, 요율 산정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, 통계정보시스템 구축, 감독기능 제고 등을 위한 준비기간 필요

(주) 동 공청회에서 논의된 카르텔일괄정비방안에 대한 내용은 공정경쟁 제35호(1998.7.31.) pp.36~38 참조

- 순보험율에 대해서는 보험개발원에 계속 인가 신청권을 주어야 함
- 보험계약자 보호 등을 위해 보험요율 적정성 유지권고 기능도 계속 보유케 하여야 함

#### **김재우 소비자문제를연구하는시민의모임 사무총장**

- 전문자격서비스를 포함하여 각종 법령상 카르텔의 폐지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찬성함
- 다만, 전문자격서비스의 성격에 따라 구분하여 접근하는 것이 필요
  - 기업이 수요자인 회계사, 관세사, 세무사 등의 보수는 기업이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으므로 자율화에 별 문제가 없음
  - 개인이 수요자인 서비스에 대하여는 가격의 적정성 여부를 소비자가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보수표제시제와 같은 보완대책이 필요
- 소비자는 가격결정과정에 대해 알 권리가 있으므로 가격정보공개요청에 대하여 해당 사업자가 응하도록 할 수 있어야 함

#### **이의영 경실련시민공정거래위원회 제도분과장**

- 의약품의 표준소매가격제도는 카르텔측면보다는 재판매가격금지행위와 관련하여 정비하는 것이 필요

#### **장용선 매일경제신문 논설위원**

- 전문자격서비스의 경우 가격에 관한 정보가 자 유롭게 유통되지 않고 진입이 엄격히 제한되어 있는 상황하에서는 보수상한제를 폐지하는 경우 가격상승의 가능성성이 높으므로 이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
- 비살균 탁주의 공급구역제한제도의 경우 주질의 보호차원에서 유지 필요
- 종합유선방송협회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사업자 간의 이해관계조정의 경우 순기능도 많음
- 폐기물 수집·운반사업시 사업자단체의 공급

계약서 첨부제도는 환경 등의 문제도 고려하여 신중한 접근이 필요

#### **박명경 동아대교수**

- 가격에 대한 카르텔인정 등과 같은 규제는 비 효율성과 인사이더와 아웃사이더간의 비형평성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보수를 자율화하고 발생되는 문제점들은 사후적으로 감독을 철저히 하는 방법 등으로 해결해야 함

#### **이용희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이사장**

- 단체수의계약제도는 '할 수 있다' 고만 되어 있어 카르텔로 보기는 어려움
- 단체수의계약대상 고시품목이 줄어드는 데 비해 금액이 늘고 있는 것은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임
- GATT 정부조달협정에서 단체수의계약제도를 제외한 것은 비중이 낮기 때문임
- 능력평가에 따라 배분하고 있으므로 별 문제가 없음
- 단체수의계약제도 운용과정상의 문제점은 중 기청이나 중기협에서 감사 등을 통해 개선할 수 있음

#### **최동규 중소기업연구원 원장**

- 정부가 단기간에 물품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제조업체가 참여하는 것이 타당함
- 단체수의계약제도는 정부가 우월한 입장에서 추진하여 온 것이며 제시된 문제에 대하여는 구매기관의 책임이 큼
- 카르텔로 보기에는 시장비중이 낮고 물량이나 가격이 정부에 의해 결정되므로 카르텔로 보기 어려움
- 단체수의계약제도의 폐지는 내수가 침체된 상황에서 수요를 진작시키는 방향이 아니며, 기업간의 공정거래관행 등이 성립될 때 추진하는 것이 필요

**김주훈 KDI 연구위원**

- 단체수의계약제도는 운용상의 문제라기보다는 제도 자체에 큰 문제점이 있으므로 폐지 필요
- 중소기업청에서 대상품목을 지정하면 독점적으로 공급하게 되므로 카르텔의 성격을 지님
- 단체수의계약제도의 경우 참여업체와 비참여업체간의 형평성 문제가 있음
- 단체수의계약제품의 업체당 평균금액이 5천만 원 정도이므로 폐지시 기업에 심각한 애로를 초래한다고 보기는 어려움
- 우리 나라가 최근에 IMF의 지원을 받기에 이를 것은 원칙이 없는 혼탁한 경제 때문이므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모든 부문에서 개혁이 이루어져야 함
- 협동조합의 행위라고 해서 모든 것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님
- 공공부문도 생산성 제고를 요구받고 있으므로 조달부문에서도 생산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어야 함

**홍준표 해외건설협회 업무지원실장**

- '92년도 이전에는 건교부장관에 의한 해외건설

의 수주경합을 조정하여 외국에서 불만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최근에는 없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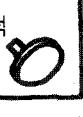
- 19개 회원사에 대해 의견을 조회한 결과 12개사는 현행제도의 유지를 바라고, 7개사가 폐지를 주장하였음

**심영섭 산업연구원 연구위원**

- 경쟁정책과 무역정책은 각각의 존재이유가 있으므로 과도하게 무역정책 부문에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아니함
- 오히려 대외무역법 제51조의 공정거래법과의 관계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 하며, 수출카르텔에 대해서는 신고를 받아 관리하는 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함

**이의영 경실련 시민공정거래위원회 제도분과장**

- 국가적인 큰 틀에서 볼 때 단체수의계약제도의 문제점은 작은 비효율에 불과하므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협력추진이라는 국가적인 큰 틀 하에서 단체수의계약제도의 폐지를 상당기간동안 유예하는 것이 타당함
- 수출문제에 대하여도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접근 필요


**단체수의계약** 團體隨意契約 「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」에 의거, 대기업에 비해 자금력, 인적 지원, 시장개척 및 관리능력 등 제반 경쟁 여건이 불리한 중소기업제품의 판로확보(販路確保)를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·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물품을 구매할 때 해당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우선적으로 수의계약(隨意契約)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여 조합원들에게 물량을 배분토록 한 제도로서 1986년부터 시행하고 있음. 공정거래법은 동 제도를 타 법령에 의한 정당한 행위로서 법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, 이는 중소기업자간의 경쟁을 제한하는 대표적인 제도로서 정부는 경쟁제한적인 법령의 축소 또는 폐지 등 규제완화 차원에서 단체수의계약 대상품목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있음.


「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」에 의거, 대기업에 비해 자금력, 인적 지원, 시장개척 및 관리능력 등 제반 경쟁 여건이 불리한 중소기업제품의 판로확보(販路確保)를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·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물품을 구매할 때 해당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우선적으로 수의계약(隨意契約)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여 조합원들에게 물량을 배분토록 한 제도로서 1986년부터 시행하고 있음. 공정거래법은 동 제도를 타 법령에 의한 정당한 행위로서 법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, 이는 중소기업자간의 경쟁을 제한하는 대표적인 제도로서 정부는 경쟁제한적인 법령의 축소 또는 폐지 등 규제완화 차원에서 단체수의계약 대상품목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있음.